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2,047,060	15,361,412
일반회계	497,680,845	14,930,425
특별회계	14,366,215	430,986
기타특별회계	14,366,215	430,9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68,334	104,050
의료급여특별회계	919,211	27,576
자활기금특별회계	1,575,608	47,268
주택사업특별회계	27,049	81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6,057	2,882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00	2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380,000	11,40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926,530	147,796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693,205	80,7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200	1,236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198,321	5,9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같음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 성립 전 승인 후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